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설립승인 의무화 등〉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00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설립 승인 의무화(안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2
2. 박물관·미술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안 제17조제3항 및 제36조 신설)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언석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5. 4.
3. 회 부 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III. 검토의견

1.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설립 승인 의무화 (안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개정안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립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8조 제1항),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1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국립 박물관</u>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u>사립·</u>	제16조(등록 등) ① ----- ----- ----- ----- ----- ----- ----- <u>공립·사립</u> <u>박물관</u> ----- ----- ----- -----

현 행	개 정 안
<u>대학 박물관</u>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 --. -----<u>대학 박물관</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u>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조¹⁾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설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 및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또는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등록이 의무사항임.²⁾

반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설립 계획을 승인 받는 것과 등록 모두 의무가 아닌 상황임. 다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등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설립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등록할 수 있다.

록을 할 경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됨.³⁾

<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등록 관련 사항 >

구분	설립 절차	등록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협의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	의무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협의 및 시·도의 경우 자체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시·군·구의 경우 시·도지사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의무	의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신청시 설립 계획 승인 가능	재량

한편,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등록시 필요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을 박물관의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⁴⁾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참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문화시설로 인정받게 되나, 이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유물 등을 전시하는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전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⁵⁾

즉, 개정안은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되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유사 시설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평생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시 설립 계획 승인과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그런데, 과거 박물관 등록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박물관에 대한 최초 입법인 「박물관법」(법률 제3775호, 1984. 12. 31., 제정)에서는 모든 박물관에 대한 등록이 의무였음.⁶⁾

5) “‘대한박물관’에 중국 당나라 도자기 전시?...민원 폭탄 정체불명 박물관”, 헤럴드경제, 2026. 4.25.
“미술관 명칭 무단 사용 못한다”, 헤럴드경제, 2019. 3.20.

6) 「박물관법」(법률 제3775호, 1984. 12. 31., 제정)

제7조 (등록)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박물관의 명칭
2. 박물관의 소재지
3. 박물관 설치자의 명칭(私立博物館에 있어서는 設置者の 名稱 및 住所)

이후 「박물관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은 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임의사항으로 변경⁷⁾하였는데,

이는 「박물관법」 폐지 전인 1992년 5월말까지 등록 박물관 16개, 준 박물관 시설⁸⁾이 32개로 지원보다 규제가 많았던 법이 결과적으로 박물관 신설을 막는 장애물이었다는 인식⁹⁾하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것임.¹⁰⁾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

제6조 (등록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國立博物館 또는 國立美術館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住所등)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박물관법」(법률 제3775호, 1984. 12. 31., 제정)

제20조 (준박물관시설의 지정과 해제)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그 전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문화·예술 및 학문의 연구와 일반공중의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신청에 의하여 준박물관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13조·제14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시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준박물관시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노희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실제적 지원책이 아쉽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월간 문화예술, 1993. 2.

10)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의 제안이유

그리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으로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도 등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¹¹⁾되었음.

최종적으로 임의등록 제도로 인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합적인 운영실태 파악이 어렵고¹²⁾, 미등록 공립박물관의 질적 성장과 운영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¹³⁾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4204호, 2016. 5. 29., 일부개정) 개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국·공립 박물관은 의무 등록, 사립 및 대학박물관은 임의 등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음.

< 박물관 · 미술관의 등록 제도의 변천 >

「박물관법」 (1984~1991)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 (1992~199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0~20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7~현재)
모든 박물관 의무 등록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임의 등록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 임의 등록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의무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임의 등록

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

제16조 (등록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장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6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

13) “공립박물관 3곳 중 1곳은 미등록”, 연합뉴스, 2014. 9. 4.

이와 같이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양적 확충과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질적 성장과 공적 책임 강화가 중요한지에 대한 시대적 평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제도는 변화해 왔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개정안과 같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등록에 대한 규제의 강화·완화 여부에 대하여는

① 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최소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공적책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⁴⁾과,

②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공유하려는 취지의 소규모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이 불가능해져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⁵⁾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을 장려하고 진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14) 박소현 등,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5) “골칫덩이 사립박물관, 보물창고로 거듭나려면”, 대학신문, 20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책임성 확보를 추진해왔으므로,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는 이러한 정책적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질서 확립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 제한 가능성·국민 문화 향유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현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¹⁶⁾를 통하여 각종 세제 혜택 및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부여 제공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독려하고 있고,

현행법 제18조에 따른 설립 계획 승인의 경우 동법 제20조17)에 따라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수익적 효과를 제공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일률적 의무화는 불필요한 규제 강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설립 승인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민간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아울러, 법 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이 의무화되었을 때 경과조치 기간을 1년으로 규정¹⁸⁾한 것을 준용하여, 동 개정안에서도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경과조치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의무화는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박물관·미술관 등록 시 서류 검토, 현장 심사, 위원회 심사 등 단계를 거쳐 약 2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관리 업무에도 행정력이 필요한 바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4204호, 2016. 5. 29.>

부 칙

제2조(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17조제3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3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는 목적은 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서
임.¹⁹⁾

개정안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는, 인력 및 시설 등에 있어 필요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막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수준을 유지하
고 국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로 이해됨.

또한, 개정안은 박물관, 미술관 외에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조²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등(이하 “자료관등”이라 함)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에 대하여도 현행법이 적용되므
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1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p.742.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 제정 당시는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²¹⁾하고 있었으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5928호, 1999. 2. 8., 전부개정)을 통하여 종전 자료관등 및 박물관·미술관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시설 까지도 법체계에 수용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이 삭제된 바 있음.

이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립 자료관등의 양적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증진하려는 취지였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필요최소한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해야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등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져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질적 향상 효과와, 개인이 수집한 자료 등을 전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자료관등의 설립을 어렵게 하여 국민의 문화향

2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정)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유권을 저하시킬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²²⁾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국내에서는 박물관(Museum), 미술관(Art Museum), 갤러리(화랑 혹은 전시관, Gallery) 등의 용어가 복합적인 의미로 활용²³⁾되고 있어 개정안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2) 「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23) 전통적인 박물관 개념과 달리 소장품 없이 전시만 운영하거나, 디지털·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도 뮤지엄 혹은 미술관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이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등록·미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정안 제17조에서 미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동법 제2조와 내용상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과,

박물관·미술관이 전시내용과 명칭이 맞지 않아 역사 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칙 조항²⁴⁾을 강화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
내정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
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4) 자료의 희소성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 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 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 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 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